팀장

부점장

은행은 채무자, 계약인수인 및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의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근저당권변경계약서

(계약인수용)

담당

(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보금자리론 및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용)

피담보채권확정전 그 채무인수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

			년	월 일
채 권 자 (근저당권자) 주 소	주식 회사	은행	(인)	인감대조
채 무 자			(인)	
주 소				인감대조
계약인수인 주 소			(인)	
Т				인감대조
근저당권설정	<u></u>		(인)	
(소유권 이전돈	· 경우 제3취득자)		

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인수

① 채권자(근저당권자), 채무자, 계약인수인 및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는 아래표시 근저당권(이하"원근저당권" 이라 합니다)설정계약의 기초가 되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존재하는 계약(아래표시 약정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"기본계 약"이라 합니다) 및 원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지위를 계약인수인이 전부 인수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.

소

원약정서상의 채무표시(20 년 월 일 현재)

=	구 분	1	2	3	4	5
원 약정서		· · · 약정서	· · 약정서	· · 약정서	· · 약정서	· · 약정서
	채무자					
	원 금					
채	이 자					
무	지연배상금 (<u>연체이자</u>)					
액	부대채무					
	합 계					

원근저당권설정계약의 표시

구분		1	2	3	4	5	
	コレカレ	지방법원	지방법원	지방법원	지방법원	지방법원	
등	관할 -	등기소	등기소	등기소	등기소	등기소	
기	접수일자						
	접수번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	제 호	
목	채권최고액						
록	물건목록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
	순위번호	순위번호 끝부분기재	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끝부분기재	

②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, 계약인수인은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권 설정계약상 채무자의 지위를 가집니다.

제2조 피담보채무의 범위

원근저당권은 다음 각 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.

- 1.계약인수인이 인수하는 제1조 표시 약정서에 따라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- 2.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계약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

제3조 다른 계약조항의 효력

제1조 및 제2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원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조항은 그대로 계속하여 효력을 가집니다.

제4조 변경등기

이 계약 당사자는 이 계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.

제5조 계약의 해제

- ① 제4조에 의한 변경등기가 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본계약 및 원근저당설정계약은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으로합니다.

제6조 비용의 부담

-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, 변경, 이전,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-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해당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 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.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,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.
 - 1.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
 - 가.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: 채권자
 - 나,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2. 근저당물건의 조사 및 감정평가 수수료
 - 가, 근저당권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 : 채권자
 - 나.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: 채무자 또는 설정자
 - 3.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: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
-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,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,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.

제7조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제3취득자)의 승낙

근저당권설정자 또는 근저당권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이의 없이 승낙하였습니다.

물건목록 및 순위번호

물건목록	순위번호						
<u> </u>	등기상순위	실제순위					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()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채무자채무인수인 및 근저당권설정자(또는 제 3취득자)가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.

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및 이 기 해하였음.	예약서 1통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
채 무 자	(인)
채 무 인 수 인	(인)
근저당권 설정자	(인)
또는 제3취득자	

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,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자 인

					위	C	기	장					
부 동 산 의 표 시													
등 7		<u></u> 과	ユ	연 월	일 적	Д		년	월		Ç	일	
등 등	기	의		목	적								
									하고 및 취 를 위(또한 허락(위 ⁺ 하에 임한다 + 복대 한다.	부동산 관한 나. 내리인	리인으 · 등기 · 모든 선임권	신청 행위 ^년 을
									서기	1	년	월	일